관세법 이야기 - 가격조작죄
"수출가격을 깎아 회삿돈을 빼돌렸다?"

안녕하세요. 강용묵 변호사입니다.

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수출 1 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. 수많은 경제주체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이에 관한 형사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합니다. 오늘은 그중 **가격조작으로 인한 형사적인 이슈**에 관해 제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2 년 동안 근무하면서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해 처리하였던 경험을 살려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.

가격조작죄가 무엇이고, 어떤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?

가격조작죄*는 말 그대로 '가격'을 인위적으로 '조작'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그 대표적인 근거 법령은 관세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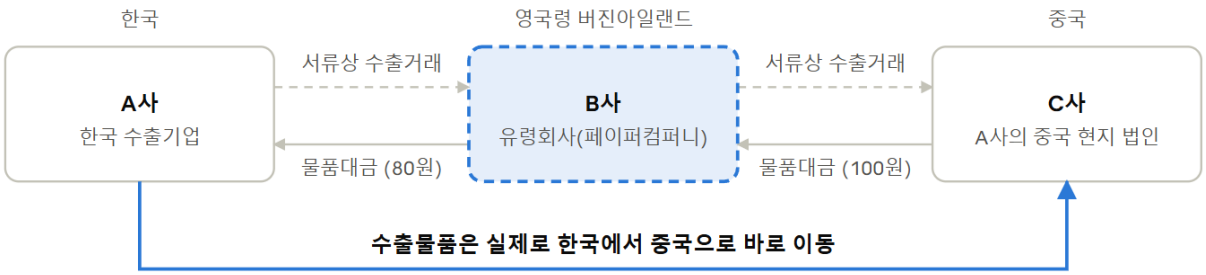
*가격조작죄는 대외무역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

관세법 제 270 조의 2 는 '가격조작죄'라는 표제하에 "**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**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"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정의 벌금(5 천만 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)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수출입업자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작하는 수출입업자에게 일정한 목적, 즉 자기 또는 제 3 자가 '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'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죄이고 수사기관 역시 이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합니다.

대표적인 가격조작죄의 유형 - 해외 비자금 조성

그렇다면 관세법상 처벌되는 대표적인 가격조작죄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처벌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**해외 비자금 조성 행위**입니다.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



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청바지를 수출하는 A 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.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은 중국에 현지 법인 C 를 설립한 후에 C 를 통해 중국에 청바지 1 벌을 100 원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A 의 대표 홍길동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(BVI)에 유령회사 B 를 설립하고 '바지사장'으로 자신의 친한 친구 김갑동을 선임한 다음 서류상 청바지 1 벌을 80 원에 B 에 수출하는 것으로 꾸미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합니다. 그리고 80 원에 청바지를 인수한 유령회사 B 는 중국 현지 법인 C 에 원래 가격인 100 원에 수출합니다.

하지만 수출되는 청바지 실물은 예전과 같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반출되어 외관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. 다만 서류상으로만 예전에 없던 유령회사 B 가 등장하는 것입니다.

속칭 '떨구기'라는 이런 거래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?

중국 현지 법인 C 는 청바지 1 벌 가격인 100 원을 유령회사인 B 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, B 는 수출업체인 A 의 계좌에 80 원을 송금하게 되어 차액인 20 원을 유령회사 B 가 보유하게 됩니다.

즉, 청바지 1 벌을 수출할 때마다 20 원이 유령회사 B 에 쌓이게 되고, 사실상 B 운영자인 A 회사의 대표 홍길동의 비자금이 해외에 조성되는 것입니다.

위와 같은 해외 비자금 조성 행위는 국내 수사당국의 시각에서 볼 때, A 회사의 대표인 홍길동에게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**'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'**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모든 가격조작이 처벌이 되나요? - '부당한 목적'의 존재 여부

그렇다면 모든 인위적인 가격조작 행위가 바로 처벌이 될까요?

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조작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 3 자가 '부당'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.

만약 위 사례에서 중국에 일시적인 한국산 불매운동이 불어 A 의 청바지 매출이 급감하여 홍길동이 이를 타개하고자 청바지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중국과 우호적인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기 위해 러시아에 유령회사인 B 를 설립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?

또 만약 유령회사의 바지사장으로 취급되는 김갑동이 시장조사, 중국 내 통관 업무 수행 등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B 를 본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

아마 위 경우 모두 A 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에게 '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'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.

특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B 회사의 계좌내역, 업무일지, 김갑동의 이메일 등은 국내 수사기관이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A 회사(홍길동)로서는 **B 회사가 유령회사가 아니라 본 거래에 있어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사당국에 제출할 필요**가 있습니다.

기타 다른 범죄 성립

혹시 이 사안에서 관세법위반죄 이외에 성립될 수 있는 다른 범죄는 없을까요?

속칭 '떨구기' 거래에서 가격조작죄 이외에 성립될 수 있는 다른 범죄로는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청바지 1 벌을 팔아서 A 회사에 100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, A 의 대표이사는 80 원만 A 회사에 귀속되게 하고 20 원은 유령회사 B 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A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

그리고 만약 홍길동이 유령회사 B 에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(다만 이 경우에 횡령죄의 피해자를 A 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령회사인 B 회사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있어서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).

법무법인 세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

정리하면 모든 가격조작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. 관건은 수사기관이 자기 또는 제 3 자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. 이에 대항하려면 수출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, 유령회사로 취급된 회사가 실제 거래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는 점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꼼꼼히 준비해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구체적인 결론은 거래 구조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관세법위반에 관한 수사는 세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, 외환조사 등 통상적인 관세조사에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.

법무법인 세움에서는 제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근무하며 관세법위반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, 세관 조사와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세관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, 수사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6 SEUM Law.

강용묵 변호사 **(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,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)**
Partner
yongmook.kang@seumlaw.com